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단53446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국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변 론 종 결 2023. 3. 29.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와 피고 B 사이에 2020. 9.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D와 피고 C 사이에 2020. 9.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D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취급점: 충북지역본부) 관리번호 남인천세무서 E

부동산공매사건의 배분기일에서 2022. 3. 16. 피고 B에게 배분된 49,967,102원의

배분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1) 원고는 2016. 10. 14. D에게 2억 원을 가게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20. 7. 16. 남은 투자원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2020. 10. 31.까지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2) 원고는 위 차용증에 근거하여 2021. 11. 17.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30017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D은 원고에게 176,263,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3. 3.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

1) D은 2020. 9. 1.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9.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은 2020.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1)항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9. 9.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의 자력상태

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공매절차 및 배분계산서 작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사가 진행한 공매절차(관리번호 남인천세무서 E)의 배분기일에서 2022. 3. 16.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49,967,102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21. 12. 22. 청주지방법원 2021카단52174호로 피고들이 위 공매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분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등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

피고들은 D에게 실제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D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의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다수의 체납처분과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자신에게 배분된 49,967,102원의 배분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D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렬

별지

부동산목록

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대 436㎡ 중

3분의 1 지분

-이상-

